



제418회국회(정기회)
제9차보건복지위원회

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정비〉

■ 백중헌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03006호)

2024. 11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전문위원 연광석

목 차

I . 개요	1
II . 주요 내용별 검토	2
1.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정비	2

I. 개요

1. 백종헌의원 대표발의안(의안번호 제3006호)

가. 제안경위

- (1) 제 안 자 : 백종헌의원 등 12인
- (2) 제 안 일 : 2024. 8. 20.
- (3) 회 부 일 : 2024. 8. 21.

나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“보험료부과점수”를 기준으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「국민건강보험법」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점수화하는 방식에서 재산만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“보험료부과점수”라는 용어가 삭제되었음.

이에 이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).

II. 주요 내용별 검토

1.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정비

가. 개정안의 내용

□ 개정안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의 개정¹⁾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점수화하는 방식에서 재산만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,

‘보험료부과점수’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소득, 재산, 월별 보험료액 등으로 풀어쓰거나(안 제27조제1항), ‘재산보험료부과점수’라는 용어로 대체하려는 것임(안 제28조).

현행	개정안
제27조(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보험료 지원) ① 국가는 농어업인이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<u>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</u>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지원금액과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을 합친 금액은 같은	제27조(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보험료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농어업인의 소득, 재산, 부과되는 월별보험료액 등을 고려하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1) 「국민건강보험법」(법률 제20211호, 시행 2024.5.7. 2024.2.6. 일부개정)

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여야 한다.	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8조(부과표준소득의 산정에 관한 특례) ①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은 농어업인에 대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경·폐경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.	제28조(농어업인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특례) ① ----- 제6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-----
② 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의 재산에 적용할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② ----- 농어업인의 재산에 달리 적용할 재산보험료부과점수-----

나. 검토의견

□ 현행법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72조에 따른 ‘보험료부과점수’에 따라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

2024년 2월 6일 「국민건강보험법」이 개정되면서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종전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면서,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방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음.

그 결과 현행법이 인용하고 있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72조²⁾에서는 현재 ‘보험료부과점수’라는 용어 대신 ‘재산보험료부과점수’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.

< 「국민건강보험법」 개정 취지 >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의 개정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관한 보험료 산정에 있어 종전의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른 등급별 분류 방식에 따르면 저소득자가 고소득자보다 소득 대비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더 높은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임.

자료: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2116132, 2115900) 검토보고서

<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 >

구분	개정 전	개정 후
소득	보험료부과점수 x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	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x 보험료율 ³⁾
재산		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

2) 「국민건강보험법」

제72조(재산보험료부과점수) ① 제6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 (이하 생략)

□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이 준용하고 있던 「국민건강보험법」 개정
에 따라, ‘보험료부과점수’라는 용어를 ‘소득, 재산, 부과되는 월별
보험료액’ 및 ‘재산보험료부과점수’으로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2024년 기준으로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예산은 36만 2천 세대 대
상 1,991억원, 어업인 지원예산은 1만 4천 세대 대상 60억원임.

<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 >

(단위: 억원, 천세대)

구 분		'17	'18	'19	'20	'21	'22	'23	'24
농 업 인	예산액	1,686	1,695	1,515	1,527	1,637	1,853	2,321	1,991
	지원세대*	327	317	325	304	304	333	337	362
어 업 인	예산액	-	-	-	52	52	75	64	60
	지원세대*	-	-	-	10	10	16	14	14

* 자료: 보건복지부 (월평균, 예산 기준)

3) 「국민건강보험법」

제71조(소득월액) ②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
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.

제73조(보험료율 등)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
령령으로 정한다.

3.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

□ (보건복지부: 수용) 농어업인에게 계속하여 건강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, 2024년 5월 7일 개정 시행된 건강보험법을 반영하여 농어촌복지법을 신속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.

-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소관부처인 농식품부와 해수부 역시 개정안에 수용 입장임.

□ (농림축산식품부: 수정)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 정책의 안정된 추진을 위해 빠른 법 개정이 필요하나, 하위법령 개정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부칙 시행일을 ‘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’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- 동법 시행령(복지부 소관) 및 관련 고시(「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」(농식품부소관))

문 의 처
02)6788-5497